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97
----------	-----

2023년 4월 25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3월 28일, 남창진 의원
2.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3. 상정일자 :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3년 4월 25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남창진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 교육기관 및 학생들에게 국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기 선양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국기 게양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국기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국기의 게양·관리·이용방법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국기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III.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3년 3월 28일 남창진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597호로 발의되어 2023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교육기관 및 학생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취지에 대한 검토

- 국기는 한 나라를 상징하고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드러내는 대표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에 따라 이러한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부장관은 국기에 대한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¹⁾ 뿐만 아니라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²⁾).

- 이러한 법적 규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각급학교에 국기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 및 실태점검³⁾하고 있으나(총무과-144297., 2022.7.19.), 국기의 교체·관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기 교육에 관한 별도의 계획조차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총무과-89057., 2023.4.17.).
- 따라서 동 조례안이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및 지원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교육기관 및 학교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국기에 대한 인식과 애국정신을 고양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법이라 사료됩니다.

1)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계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

3)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 점검기간 : 2022.7.18.~2022.8.12.
- 점검대상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1,442개 기관·시설
- 점검총평
▶ 국기계양대 및 국기 상태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대부분의 학교가 기준을 준수하여 국기 계양대를 설치하였으며, 계양된 국기가 오염·훼손되지 않음
- 국기와 깃봉에서 변색·파손이 발견된 기관은 즉시 교체 등 시정 조치
- 실태점검 결과
▶ 전반적으로 기관별 관리상태가 양호함
- 우수사례
▶ 기관 내 전반적인 국기관리 실태 파악 및 선양 우수사례 등
- 해당 사항 없음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국기 게양일 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는 국기 선양에 대한 교육과 국기 점검·관리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면에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⁵⁾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구성 및 형식적 측면에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2조)

○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각 호에서는 상위법⁶⁾ 및 법 시행령⁷⁾에 따라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2조제4호에서는 ‘교육기관’을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각 목의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안 제4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 중 ‘라 목’의 ‘공직유관단체⁸⁾’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존재하지 않아

4)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22.8.

5)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10판)’, 법제처, 2021.12

6)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7)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한다.

제13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①~② (생략)

③조기의 게양 및 강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게양 시에는 깃면의 왼쪽 윗 모서리가 깃봉에 닿을 때까지 깃면을 올렸다가 깃면 너비만큼 내려 게양한다.

2. 강하 시에는 깃면의 왼쪽 윗 모서리가 깃봉에 닿을 때까지 올렸다가 다시 내린다.

8)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 규정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교육기관’의 뜻을 명확히 나타내는 정의 규정으로, 정의 규정은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두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라목’의 ‘공직유관단체’는 현재 해당하는 단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반기별로 지정되는 고시⁹⁾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3) 국기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안 제5조는 국기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안 제5조는 다른 조항들과 달리 사업비 지원 대상을 ‘교육기관’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조례¹⁰⁾와 달리 국기 선양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국기 선양사업 지원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교육감의 자의적인 예산 지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물론 안 제1조에서 동 조례안의 목적 대상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4조¹¹⁾에서 국기선양사업 범위를 교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① (생략)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를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9) 「2023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시행 2023. 1. 1.]

공직유관단체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인사혁신처고시로 지정 고시함.

10) 「서울특별시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6조(국기 선양사업) 시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계양대 설치 사업 지원

2.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1) 제24조(국기선양사업의 범위)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는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및 홍보 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안 제5조의 규정은 내용의 불명확성과 포괄성으로 인하여 대상이나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을 가져오거나 동 조례의 적용상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안 제5조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국기 선양사업의 실제적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 제정에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5353.,2023.4.7.).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 안 제5조에 국기 선양사업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수정함.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97
----------	-----------

제안연월일 : 2023년 4월 25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5조는 국기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비 지원 대상을 특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기 선양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의적 예산 지원 및 해석상 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국기 선양사업의 실제적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의 기준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국기 선양사업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5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다음과 같이 각 호를 신설한다.

1.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지원
2.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5조(국기 선양사업 지원) 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u>위하여</u> 국기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5조(국기 선양사업 지원) ----- ----- ----- <u>위하여 교육기관에 다음 각호의</u>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기 계양대 설치 사업지원</u> 2. <u>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u> 3. <u>국기에 대한 교육활동</u> 4. <u>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소재 교육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애국정신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 기관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기관에서 국기 선양 및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기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 교육기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기의 게양방법으로 국기를 게양하되, 제1항제2호에서 정한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제5조(국기 선양사업 지원) 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다음 각호의 국기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지원
2.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구성원이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도록 국기의 게양·관리·이용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다.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으로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즉시 교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법에서 정한 규격과 재질에 맞는 국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